

(별표 4)대학원 학위논문 및 졸업연주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의 학위논문의 작성, 제출, 심사와 졸업연주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논문제출 자격

제2조(학위논문 제목제출 학기 및 자격) 각 대학원 별 학위논문 제출 자격은 아래와 같다. 단, 목회신학대학원은 예외로 한다.(2017.12.20.개정)

①각 대학원에서 논문을 제출하려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이러닝을 수강하고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때까지 수료증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2016.04.18. 개정)

②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2학기(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박사과정은 3학기(24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각각 평균평점이 “B-” 이상인 자에게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한다.(2017.12.20.개정)

③목회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75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C-”이상인 논문을 쓰기로 선택한자 자, 박사과정은 4학기(24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B-”이상인 자에게 학위 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한다.(2017.12.20.개정)

④신학대학원은 4학기(64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B-”이상인 자에게 학위 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한다.(2016.08.18. 개정, 2017.12.20.개정)

⑤상담복지대학원과 선교대학원 2학기(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서 각각 평균평점이 “B0”이상인 자에게 학위 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한다.(2017.12.20.개정)

⑥교회음악대학원 교회음악 전공자(M.C.M.)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 혹은 졸업연주 중 택일할 수 있다. 논문을 쓰고자 하는 자의 제출자격은 교회음악 전공자(M.C.M.)는 3학기(27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단, 6학기 과정자 중 논문을 선택한 자는 4학기(64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한다.

⑦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기말까지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위논문 제출을 보류한다.

제 3 장 지도위원회 구성

제3조(논문지도신청)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논문지도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도교수) ①석·박사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이 결정하며 필요시 지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의 전임교수 중에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대학 은퇴교수에게 논문지도를 의뢰할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9.08.01. 신설)

제5조(논문지도교수 등의 변경) ①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의 변경은 허락되지 아니하나, 유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연구계획서가 통과되어 논문지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논문지도교수가 정년퇴직하였을 경우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2019.6.1. 신설)

제6조(논문지도교수의 배정)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교수 1인이 담당할 학생의 수는 한 학기당 각 대학원과정에 5명 이내로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허락을 얻어 학생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논문지도 횟수) 학생은 논문을 쓰면서 지도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며, 총 논문 지도는 학기 중 석사과정은 5회 이상, 박사과정은 10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논문제목 제출

제8조(논문제목 확정)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논문제목을 확정하여 논문제목선정사유서와 함께 소속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2월 졸업예정자는 3월말, 8월 졸업예정자는 9월말).(2019.6.1. 개정)

제9조(논문 제목 변경)①논문연구계획서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논문제목 변경원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2019.6.1. 개정)

②논문연구계획서가 인준된 후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논문제목이 변경될 경우, 연구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논문제목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제출된 논문제목 변경원을 검토한 후 연구계획서 재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③논문 심사에서 논문제목이 변경된 경우, 연구자는 심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논문제목 변경원을 소속 대학원장에 제출하여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2017.12.20. 조전면 개정)

제 5 장 논문연구 계획서

제10조(논문연구계획서의 구성)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논문작성법」(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을 참고하여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 잠정적 목차, 참고문헌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분량은 석사과정은 A4 용지 9장 내외, 박사과정은 A4 용지 15장 내외로 (각각 참고자료 목록포함) 한다.

제11조(논문연구계획서 제출) 각 대학원의 연구자는 학위논문연구계획서와 인준서를 지도교수에게 지도를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2월 졸업 예정자는 4월말 이전, 8월 졸업예정자는 10월말 이전).(2017.12.20.개정)(2019.6.1.개정)

제12조(논문연구계획서 인준) ①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일반대학원장이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2인이 심사하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인준한다(2월 졸업 예정자는 5월중, 8월 졸업 예정자는 11월중). 단, 심사위원 3인의 종합평가 결과 “C”가 2개 이상이면 불합격으로 한다.(2019.6.1. 개정)

②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소속 대학원장이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아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인준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 이내에 인준한다.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인준심사위원회’는 소속 대학원장이 5인의 관련 및 인접전공 교수들(소속 대학원장도 가능)로 임명하여 구성하며, 위원장도 소속 대학원장이 임명한다.(2016.05.13. 개정)

인준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심사위원의 3/5 이상의 평가점수가 "B"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논문 연구계획서 인준 요청은 학기 중 1회로 제한하며, 연구계획서의 인준이 3회 이상 부결되었을 때에는 논문심사 청구자격이 박탈되고 박사학위과정에서 탈락된다.(2016.05.13. 개정)

③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상담복지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과정은 지도교수가 인준한다.

④목회신학대학원 심사위원은 침례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장이 정하는 5인의 교수로 하되 이중 1인은 SWBTS교수로 한다. 필요시 목회신학대학원장은 외부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목회신학대학원장은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목회신학대학원장이 정한다. 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SWBTS 심사위원은 구술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도 논문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2016.12.26. 개정)

제13조(학위논문연구계획서 인준 통보) 각 대학원장은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지적 받은 사항을 각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수정하게 하는 한편 인준 여부를 통지한다. 이때 비로소 학생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인준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목적은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2017.12.20.개정)(2019.6.1.개정)

제 6 장 학위논문 작성

제14조(학위논문의 작성) 학위 논문은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지도교수 및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논문의 분량) 논문의 분량은 「논문작성법」(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에 따라 A4용지에 작성하되, 논문 표지, 목차, 참고자료, 목록, 부록 등을 제외한 서론부터 결론까지의 분량으로 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교회음악과 페다고지 전공)은 35페이지 이상, 목회신학대학원 석사과정·신학대학원·선교대학원(M.A.)·상담복지대학원·교회음악대학원·일반대학원 석사과정(유아교육과, 교회음악과 음악이론 전공)은 각각 50페이지 이상,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은 70페이지 이상,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신학과)은 200페이지 이상(기독교교육전공 제외),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신학과내 기독교교육전공)과

목회신학대학원 박사과정은 각각 150페이지 이상,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상담심리학과)는 100페이지 이상으로 작성해야 한다.(2016.08.18, 2016.11.03 개정)

제16조(논문 지도 기간)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생은 논문계획서를 제출한 때부터 최소한 2학기 이상 논문지도 교수의 정기적인 지도를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는 지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지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 7 장 졸업연주 및 렉처리사이틀(Lecture Recital)

제17조(자격) 졸업연주 및 렉처리사이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 ②직전 학기 실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 ③전공실기 과목에 과락이 없는 자

제18조(졸업연주) 졸업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졸업연주계획서 제출, 단, 페다고지전공은 소논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②전공별 전임교수의 프로그램(프로그램 노트 포함) 심사(연주 8주전)
- ③졸업연주 비공개 심사(연주 4주전)
- ④졸업연주
- ⑤페다고지전공의 소논문은 졸업연주 후 1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제19조(졸업연주 및 렉처리사이틀 심사) ①졸업연주 및 렉처리사이틀 심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한 전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의결은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합격을 결정한다.(2017.08.28. 개정)

②페다고지전공의 소논문심사는 겸임교수 이상, 실기전공 교수와 지도교수를 포함한 2인 이상이 만장일치로 합격과 불합격으로 결정한다.

제20조(졸업연주회 및 렉처리사이틀 과제)

- ①졸업연주 및 렉처리사이틀은 개인발표회 또는 2인 음악회로 한다.
- ②개인 발표회의 경우는 50분 내외로 한다.
- ③2인 음악회의 경우 연주시간을 개인당 30분 내외로 한다.
- ④연주회를 교외에서 할 경우 교회음악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논문지도비 및 심사비 납부

제21조(논문지도비 및 심사비, 졸업연주 심사비 책정) 논문지도비 및 논문심사비와 졸업연주 심사비 책정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논문지도비 납부) 논문연구계획서가 승인된 학생은 매 학기 책정된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17.12.20.개정).

제23조(논문심사비, 졸업연주 심사비 납부) ①학위청구논문이나 졸업연주를 심사받고자 하

는 학생은 책정된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2017.12.20.개정).

②논문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지 못했거나, 논문심사 또는 졸업연주 심사에서 불합격되었거나, 심사신청 후 학생의 사정으로 심사를 다음 학기 이후로 연기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비와 심사비 또는 졸업연주 심사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제 9 장 공개발표

제24조 (삭제)

제 10 장 학위논문 심사 신청

제25조(심사신청서 제출) ①학생은 지도교수의 지속적인 지도 아래 논문을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인준을 받은 후 심사용으로 가제본 된 논문 1부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논문심사신청서와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서, 논문지도관리카드(지정양식)를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서 가제본한 심사용 논문 3부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석사과정은 심사일 1개월 전, 박사과정은 심사일 2개월 전).

②일반대학원, 상담복지대학원, 선교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은 심사용 가제본 논문 및 학위논문인준서 제출시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학위논문 유사도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7.04.24. 개정, 2017.08.28. 개정)

제 11 장 심사위원회 구성

제26조(논문심사위원회) 학생의 논문심사위원회는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은 석사과정 3인(지도교수 1인, 본 대학 또는 타 대학교수 중 2인), 박사과정 5인으로 하되 심사위원 1~2인은 외부교수로 각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단, 목회신학대학원 공동박사과정의 논문심사위원은 침례신학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이 정하는 5인의 교수로 하되 이 중 1인은 SWBTS 교수로 한다. 필요시 목회신학대학원장은 외부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목회신학대학원장은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있다.(2016.12.26. 개정)(2017.04.24. 개정)

제27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박사과정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단, 목회신학대학원 공동박사과정의 SWBTS 심사위원은 구술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도 논문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2016.12.26. 개정)

제 12 장 논문심사

제28조(논문 심사기간) 심사위원회는 완성된 논문의 심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내에 심사

(구술시험 포함)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논문 심사 방법) 심사는 본문내용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30조(본문 내용 심사) ①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주제 및 취급 방법의 타당성, 논문 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그리고 연구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

②학위 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31조(구술시험) ①구술시험은 심사위원회에 의해 석사과정은 1회, 박사과정은 2회(각각 1차,2차심사)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박사과정은 이 때 1차심사에 통과해야 2차심사를 할 수 있으며, 1차 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는 2차 심사를 하지 않는다.<2009.12.1.><2019.3.1. 개정>

②심사 첫 학기의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1회(1차,2차)에 걸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009.12.1.>

③두 번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것으로 간주한다.<2009.12.1.>

④대학원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입회할 수 있다.

제32조(합격기준) ①일반대학원 및 목회신학대학원 석사과정과 상담복지대학원,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과정은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종합평가 점수가 “B”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2016.08.18개정)

②일반대학원 및 목회신학대학원 박사과정은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 심사위원의 3/5 이상의 종합평가 점수가 “B”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제33조(결과보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 요지와 최종 심사결과 보고서에 가, 부로 합격여부를 명시하여 소정 기일 내에 해당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사) ①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수정과 보완을 하여 다음 학기나 그 이후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논문심사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②재심사에서 다시 불합격된 경우에는 학위과정에서 탈락된다.

③논문 미필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수정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을 경우 종전의 심사 횟수 제한은 무효로 하고, 그 이후의 심사횟수는 위의 규정에 의한다.

제35조(심사제외) 일정대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나 졸업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학생, 논문지도비 및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3 장 논문제출

제36조(논문의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지도교수로부터 인쇄허락서(소정양식)를 받아서 정해진 규격에 따라 인쇄 제본한 후 지도교수와 지도위원들의 날인을 받아 소속 대

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2월 졸업예정자는 1월 30일, 8월 졸업예정자는 7월 30일). 제출 논문부수는 모두 6부이며, 논문이 담긴 USB, 논문이용 동의서, 논문이용허락서(소정양식)이다(2017.12.20.개정).

제37조(학위논문 제출기간) 수료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①일반대학원과 목회신학대학원의 석사과정은 과정 수료 후 4학기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과정 수료 후 8학기 이내로 한다.

제38조(논문의 구비사항) 학위논문은 본교 「논문작성법」(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에 따라 구비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제39조(학위 논문의 체제와 양식) 논문의 체제와 양식은 본교 「논문작성법」(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에 따른다. 단,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와 상담심리학과, 그리고 상담복지대학원 상담심리학과와 사회복지학과는 해당 학과가 결정한 논문작성 양식을 허용한다.

제40조(학위수여 제한) 대학원 학위논문 및 졸업연주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의해 탈락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5월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6월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9.(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12월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2.(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3.(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4.(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5.(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1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15조(논문의 분량)는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16.(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7.(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8.(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2.(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일 2019. 6. 1.)

23.(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일 2019. 7. 24.)